

2016년도 제3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 10.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8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장재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창전동 439 제보육시설동) 취득을 위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취득재산 :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창전동 439 제보육시설동) 매입

○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

소재지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공시지가 (천원/㎡)	지목	사용현황	용도지역	준공일
창전동 439 제보육시설동	지상1층	483.2	114.5	3,149	대	공동주택	제2종일반 주거지역	'03.11.28.

○ 어린이집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행정동)	유형	대표자/원장	정원/현원 (명)	보육교직원 (명)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	창전동 439(서강동) 제보육시설동	민간	박민숙/강순옥	32/30	8

□ 주요추진사항

- 2016. 06. 22.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 제출(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
- 2016. 06. 30. :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
- 2016. 07. 22. :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개최
- 2016. 07. 29. :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승인)
- 2016. 09. 10. : 구립어린이집 확충대상 부지(2개소) 매입계획 수립
- 2016. 09. 12. :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재산취득 적정여부)
- 2016. 09. 30. :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16. 10. 10. :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통보(승인)

□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

- 2016년 서울시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재원별			용도별			
	계	시비	구비	계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	1,180	1,121	59	1,180	1,160	20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시비매칭사업(서울시 95% : 마포구 5%)

- 시비 : 2016년도 예산 기 확보(1,121백만원)

- 국고보조금 : 2016년도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 327백만원 확보

⇒ 구비분 59백만원 면제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동(同)관리계획안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및 구청장 공약사항인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마포구 창전 태영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 하고 있는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창전동 439, 지상1층, 대지 483㎡/연면적 114.5㎡, 공동주택,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동(同)계획안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마포구는 신축, 기존 어린이집 매입 및 전환 시 총 비용의 95%를 시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어, 해당 어린이집의 매입에 따른 예산을 검토한 바,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를 합친 총비용은 11억 8천만원으로 매입비의 95%인 11억 2,100만원은 시비, 5%인 5천9백만원은 구비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이미 2016년도에 서울시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해당 어린이집 매입 보조금으로 서울시비 11억 2,100만원이 내정된 바 있고, 금년도에 해당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국비지원금 3억2천7백만원 또한 모두 지원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구비 부담분도 면제해 주기로 하여 실제 해당 어린이집 매입 시 구비부담은 전혀없이 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해당 어린이집은 2003년에 사용승인되어 정원 32명 규모의 창전동 태영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주인 원장이 매도의사를 밝혀와 구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고 전면공사가 필요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일반 건축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보다 리모델링비 등이 적게 들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요즈음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이를 어디에 믿고 맡길 것인지 고민부터 하게 되는 시대로 국가에서는 저출

산 대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는 등 기존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마포구는 최근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토지가격이 비싸고 신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운영하는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현재 공동주택 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매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구비 부담없이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고 리모델링 비용 등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 예산절감의 장점도 있지만, 매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 1) 매입 건축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법 등 적용으로 용도제한(일반상가 및 주거 등 일반용도로 전환을 제한받음)을 받게 되지는 않는지 2)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관리·운영비가 증가되어 구(區)의 예산부담이 증가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매입 시 뿐만 아니라 매입 후 관리·운영 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매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